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. 4. 26 선고 2022가단6898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4. 26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/3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7. 12. 28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 박남진

별지